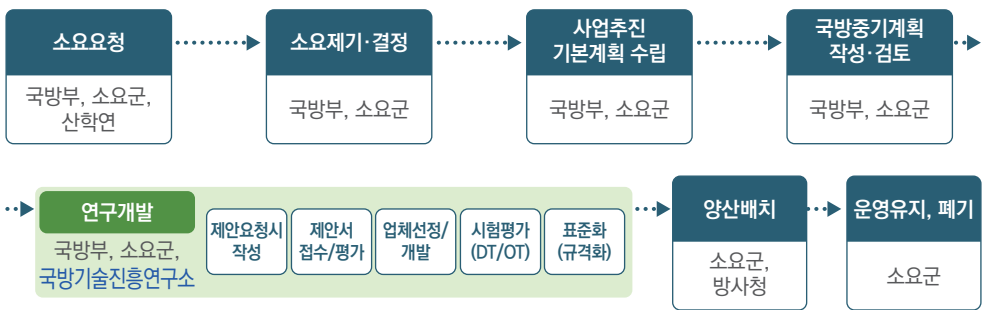


# 전력지원체계사업

## 제1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개요

### 1. 사업개요

전력지원체계 획득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규정되어 있으며, 연구개발 사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추진



### 2. 사업구분

-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정부투자 연구개발
- 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업체투자 연구개발
- 국방부(또는 타 정부부처)와 산·학·연이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정부·업체공동투자 연구개발
- 국방부와 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정부공동협력사업
- 민·군기술협력 출연금으로 개발하는 민·군기술협력사업
- 「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

### 3. 관련규정

- 국방부 훈령 「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」 제3장
- 국방부 지침 「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」
- 민·군기술협력사업(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) 및 「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 사업의 관리와 기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원 수행